

## 조세특례제한법

제목	내용	시행일	기간
연구인력개발(R&D)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제10조)	①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	2021년 01월 01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10조)	디지털 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2021년 01월 01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4)	벤처캐피탈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2021년 01월 01일	2022년 12월 31일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8조)	① 대상: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021년 1월 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제24조)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제 24조로 통합	2021년 01월 01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요건 규정(제26조의 2)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2021년 01월 01일	2022년 12월 31일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 규정(제27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14%)	2021년 01월 01일	2022년 12월 31일
기부금장려금단체 제도 정비(제75조)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 중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을 4월 30일로 연장 등	2021년 01월 01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제87조)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사업소득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	2021년 1월 5일 이후 가입연장분부터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제129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기한이 다음해 2월말 혹은 4월 15일까지였으나,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고 4월 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확인	2021년 01월 01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96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4년, 8년 민간임대주택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4년, 8년 민간임대주택은 자진등록말소가 되었는데,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 추정 예외사유로 사후관리를 합리화 함(법개정으로 의무 임대무기간을 못 지킨 것이므로 추정사유에서 제외)	2021년 01월 01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정비(제96조)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20년 08월 18일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대한 사후관리(제96조의3)	기준에는 2020년 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준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임대료 인하로 인한 세액공제를 추징했는데, 개정세법은 기간제한 없이 임대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사후관리를 보완함	2020년 07월 01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시행령 제100의6 2항)	총급여액 0~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추가됨.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	2021년 01월 01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제100조의 32)	① 종전에는 투자포함형의 계산방식이 [당기소득 X 65% -(투자+임금증가+상생) X 20% 이었으나, [당기소득 X 70% -(투자+임금증가+상생) X 20%로 당기소득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아졌음. ② 종전에는 임금증가 대상이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들의 임금증가였으나,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급여 기준이 높아졌음.	2021년 01월 01일	

##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 8)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건당 2만원으로 추가	2021년 01월 01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1항 6호)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추가	2021년 04월 01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제108조)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 범위가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4,800만원 ~ 8,000만원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당 규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를 위한 것이므로 조문을 합리화한 것임)	2021년 07월 01일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규정(제104조의8)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	2021년 07월 01일	